

의안 번호	제3578호
----------	--------

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02월 28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03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03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03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쇠퇴하고 정체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활성화를 도모하며 양촌읍 구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및 주민참여·화합공간 건립을 통해 주차난 및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,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인 도시재생을 추진
- 이에, “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” 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 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제1항 제8호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(토지은행)와 업무협약 체결 전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협 약 명 : “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”
업무협약
- 나. 협 약 기 관 : 김포시, 한국토지주택공사

다. 협 약 목 적 : “20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계획” 상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(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, 이하 “본 사업” 이라 한다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라. 협약의 주요내용

- 1) 비축대상 토지 :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으로 승인·고시하는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 또는 권리
- 2) 협약의 유효기간 :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상의 비축기간 및 공급기간까지
- 3) 보상업무의 범위
 - (김포시) 국·공유지 관리청과 국유지 관리전환 및 공유지 유무상 귀속에 관한 협의 등
 - (한국토지주택공사)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업무 수행
- 4) 비축토지의 공급 : 비축토지의 공급은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정해진 ‘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’ 에 따름
- 5) 비축토지의 사용
 - 김포시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에 사용함을 원칙
 - 한국토지주택공사(토지은행)가 김포시로부터 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대금 완납 전 사용승낙을 요청받은 경우 대상토지·공급시기·공급조건 등이 포함된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용 승낙
- 6) 협약의 발표 :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, 협약 기관 양측 대표가 협약서에 직인을 날인한 후 효력 발생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